

##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57호  
일부개정 2021년 9월 24일 조례 제1949호  
일부개정 2024년 11월 12일 조례 제2219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오산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책무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화학물질로 인한 오산시의 주민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오산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·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오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)**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오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화학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학안전관리계획은 「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1. 9. 24>

1. 화학사고 대비·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
2.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
3.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

##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

4.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 · 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

5.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

6.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오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4. 11. 12>

④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자체 없이 경기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, 소방서장,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(이하 “유관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수립된 화학안전관리계획에 홈페이지 게시 등 주민들이 계획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.

**제5조(오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·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 9. 24>

1.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 · 변경

2.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· 변경

3.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

4.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 ·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국장, 보건소장, 환경사업소장, 환경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<개정 2021. 9. 24, 2024. 11. 12>

1. 오산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

2. 오산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

3. 삭제 <2024. 11. 12>
  4. 삭제 <2024. 11. 12>
  5. 오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  6. 화학 · 환경 ·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7. 화학물질 관련 산업체에서 추천한 사람
  8.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9.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·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품위손상,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8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및 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

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·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

##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

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0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1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·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**제12조(의견 청취)**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,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회의록)**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· 장소 및 참석자 명단
  2. 회의안건, 회의내용 및 그 결과
 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 · 보관할 수 있다.
- ③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기업의 비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.

**제14조(비밀 준수 의무)**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수당)**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1. 12>

**제16조(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심의 · 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9. 24>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서 정한다. <개정 2024. 11. 12>

1.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, 산업계와 민간단체 추천 위원 각 1명 및 전문가 위원 1명
2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추천한 주민 대표 중 1명
3. 해당 지역의 사업장 관계자 또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1명
4. 해당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· 제5항 및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는 “협의회”로 본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구성 시 위원회가 정한다. <개정 2024. 11. 12>

##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

**제17조(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)** ①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오산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(이하 “화학물질 조사결과”라 한다)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2. 사고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3.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. 다만,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.

4.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

**제18조(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)**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(이하 “사고대응계획”이라 한다)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,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. <개정 2021. 9. 24>

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1. 9. 24>

1.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·훈련 방법 및 시기

2.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

3. 화학사고 초동대응 지휘체계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

4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·장비 등의 동원방법

5.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

6.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긴급구호물자 지급, 응급의료지원 등 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

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자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9. 24>

[제목개정 2021. 9. 24]

**제19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)**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1. 9. 24>

1.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

2.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

3.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정보전달 방법 및 절차,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

4.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9. 24, 2024. 11. 12>

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1. 9. 24>

[제목개정 2021. 9. 24]

**제20조(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)**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

##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

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.

1. 사고 발생 여부,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
2. 사고 발생 시간,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
3.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
4.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하거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화학사고 대응과정 및 종료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.

**제21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**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저감 계획서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1. 12>

**제22조(화학물질모니터단)** ① 시장은 화학물질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화학물질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오산시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
2.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

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모니터단을 위촉한다.

③ 모니터단원의 선발인원, 임기, 교육 및 구체적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모니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모니터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모니터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23조(교육·훈련)**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·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·지방고용노동관서·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비용 지원 등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·운영자

2. 환경·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

**제2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1. 9. 24 조례 제194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4. 11. 12 조례 제221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